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4.19(수) 17:00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**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엄재창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·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유품종보호권을 유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입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도내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·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